

(주)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592건 적발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 안전문화 정착될 때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속 관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주)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29.부터 4.7.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주)세아베스틸은 지난 3.2. 발생한 사망사고로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특별감독 대상이 되었다.

(주)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주)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감독 결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22.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되었으며,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예를 들어, '22.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고, '22.9월 7.5톤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 (주)세아베스틸 최근 1년간 사망재해 개요 >

- ▲ '22.5.4. 근로자가 퇴근을 위해 이동 중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1명)
- ▲ '22.9.8. 쇠기둥(약 7.5톤)을 트럭에 상차하기 위해 근로자가 차량 적재함 위에서 적재 위치를 조정하던 중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1명)
- ▲ '23.3.2. 연소탑 내부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 중 고온의 찌꺼기가 근로자를 덮쳐 사망(2명)

또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 번째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주)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재발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주)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주)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

담당 부서 < 총괄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용다솜 (044-202-8902)
< 공동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책임자	과 장	박미화 (02-2250-5777)
		담당자	근로감독관	석지원 (02-2250-577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책임자	과 장	문성호 (051-850-6495)
		담당자	근로감독관	김예찬 (051-850-648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책임자	과 장	임동학 (062-975-6396)
		담당자	근로감독관	황혜정 (062-975-6330)

[붙임] (주)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

1. 특별감독 개요

- (주)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하여 본사·군산공장·창녕공장에 대해 소관 청별 특별감독반을 구성·실시

사업장	근로자수	소관 청 (지청)	감독기간
본사	141명	서울청 (서울서부)	3.29.~3.31.(총 3일)
군산공장	1,500명	광주청 (군산)	3.29.~4.7.(총 8일)
창녕공장	12명	부산청 (창원)	3.29.~3.30.(총 2일)

2. 특별감독 결과

(단위: 건, 만원)

구분	계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위반 법 조항	위반 건수	위반 법 조항	위반 건수	금액 (예정)	위반 법 조항	위반 건수
합계	92	592	18	264	38,855	74	328
본사	5	5	5	5	6,515	-	-
군산	88	569	15	257	32,320	73	312
창녕	12	18	1	2	20	11	16

* 위반 법 조항은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 위 특별감독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협력업체의 법 위반사항도 행·사법조치 예정
(과태료 13개소, 사법조치 2개소)

* < 주요 위반내용 >

- ① (본사) ▲(과태료)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 ② (군산) ▲(과태료) 안전검사 미실시,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안전교육 미실시 등,
▲(사법처리)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등
- ③ (창녕) ▲(과태료) MSDS 미게시 등, ▲(사법처리) 안전난간 미설치 등